

배 포:

제 한

CCPR/C/KOR/CO/3/CRP.1

31 October 2006

원문: 영어

자유권규약위원회

제88차 회기

2006년 10월 16일-11월 3일 제네바

ADVANCED UNEDITED VERSION

규약 제40조에 의거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 심의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 대한민국

1.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6년 10월 25일과 26일의 제2410차와 2411차 회의(CCPR/C/SR.2410 과 2411)에서 대한민국의 제3차 정기보고서(CCPR/C/KOR/2005/3)를 심의하였고 2006년 11월 2일 2422차 회의(CCPR/C/SR.2422)에서 아래와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A. 들어가며

2. 위원회는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3차 정기보고서에 환영한다. 위원회는 고위급 대표들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서면 및 구두질의에 답변을 제공한 대표단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높게 평가한다.

B. 긍정적인 요소

3. 위원회는 파리원칙에 제시된 기준에 일치하여 2001년에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

4. 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설립 그리고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의 도입 및 여성채용목표제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비차별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했던 자발적 조치들에 주목한다.

5, 위원회는 가정 폭력을 퇴치하기 위해 취해진 당사국의 조치들, 특히 그러한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검사의 임명에 환영한다.

6. 위원회는 또한 2008년 그 효력이 발생할 호주제 폐지가 포함된 민법 개정안이 2005년 3월 국회에서 채택된 점에 대해 환영한다.

C. 주요 관심 분야 및 권고

7. 위원회는 위원회가 채택한 개인통보에 대한 견해의 효과를 발효하게 하는 국내적 조치가 없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가 위원회의 견해를 채택할 때, 당사국은 그러한 견해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8.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14조 5항의 유보를 철회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 한다. 그러나 규약 제22조 유보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 유감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14조 5항의 유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규약의 제22조 유보를 철회할 것을 장려한다.

9. 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 중임에 주목하고 존재하고 있는 혹은 제안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불충분하며 테러리즘의 정의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이다.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26조)

당사국은 모든 테러방지 및 관련 입법 조치들이 규약에 일치할 것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통신감청, 수색, 구금 및 추방과 관련된 국가의 규정들은 규약의 관련 조항들에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국내입법에 '테러리스트 행위들'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10. 위원회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 고용된 많은 여성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또한 정치, 입법 및 사법 분야의 고위직에 있어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는 점에 우려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26조)

당사국은 정치, 입법 및 경제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효과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및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국회와 사법부에서 고위직 여성의 대표성 증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11.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과 계획들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가정폭력의 책임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데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부부간 강간을 포함한 가정폭력에 대한 특별한 법적 조항이 당사국 국내입법에 없다는 점에 우려한다. (제3조, 제7조 및 제26조)

당사국은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취한 조치의 효율성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부부간 강간이 형사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경찰을 포함한 법 집행관들은 가정폭력사건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일반 대중들을 민감하도록 하는 인식 재고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2. 위원회는 사업장에서의 이주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차별적인 대우와 직장에서의 남용을 직면하고 있고, 적절한 보호와 구제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한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공적인 신분증명서가 압수 및 보유되고 있는 점 또한 우려사항이다. (제2조, 제22조 및 제26조)

당사국은 이주노동자들이 규약에 포함된 권리들을 차별 없이 향유할 것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 복지와 교육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뿐만 아니라 노조 결성권 및 적절한 형태의 구제 규정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3. 위원회는 구금 장소에서의 고문 혹은 다른 형태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주장에 대해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일정 형태의 징벌의 관행, 특히 수감, 쇠사슬 및 안면 마스크의 사용 및 명백한 기한의 제한 없이 30일 간의 독방구금을 통한 징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이 점에 비추어, 위원회는 또한 책임있는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처벌이 결여되어 있음을 우려한다. (제7조, 제9조)

당사국은 정신병원을 포함한 모든 구금 장소에서 법률 집행관들에 의한 모든 형태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조치들에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와 심문시 비디오녹화를 포함할 수 있다. 당사국은 이러한 행위를 한 가해자를 기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한 처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사국은 징벌의 가혹하고 잔혹한 조치들, 특히 수감, 쇠사슬과 안면마스크의 사용 및 30일의 독방구금을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14. 위원회는 재판 전 피의자 구금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당사국의 방해에 우려한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이 피의자 신문 시에만 허용되며, 심지어 신문 동안에도 경찰관이 수사방해, 공범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의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또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신병원 시설에 구류되는 동안 변호인의 조력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한다. (제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보호 구금에 변호인의 신속한 접견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15. 위원회는 개인이 체포 영장없이 48시간까지 구금될 수 있는 긴급체포절차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위원회는 이 절차가 지나치게 의존되고 남용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당사국은 규약 제9조에 일치하도록 긴급체포절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그렇게 구금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안의 즉각적인 채택을 촉구한다.

16. 위원회는 형사 조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해 구금된 자들이, 특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도한 재판 전 구금 기간(일반 사건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사건의 경우 50일)에 비추어, 규약 제9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구금의 적법성을 결정할 수 있는 판사에게 신속하게 회부되는 자동적인 권리를 향유하고 있지 않는 점에 우려한다. (제9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형사 범죄로 체포된 자 혹은 구금된 자의 보호를 반영하는 입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당사국은 어떠한 구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사법적 감시를 받는 것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17. 위원회는 (a) 2003년 병역법 개정으로 현역 복무 거부로 인한 처벌이 최대 3년 징역형을 받고 있고, 그들이 재소집될 수 있고 새로운 처벌을 받게 되는 횟수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제한이 전혀 없으며¹⁾; (b) 병역의무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용에서 배제되며; (c) 유죄를 선고받은 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전과자로 낙인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들에 대해 우려한다 (제18조)

당사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규약 제18조에 일치하는 입법을 제정할 것을 장려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2의 11항(General Comment 22, para.11)에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18.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최근의 시도들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이 존속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총의(consensus)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른 기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이 조항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규약의 제19조 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19조)

당사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이로 인해 부과된 형벌이 규약의 요건에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긴급한 사안으로 삼아야만 한다.

19. 위원회는 노조 결성과 노조 활동에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상당한 수의 고위 공무원이 있고 당사국이 특정 노조, 특히 전국공무원노조(KGEU)를 인정하기를 꺼려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제22조)

당사국은 고위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재고해야 할 것

1) 예비군 복무대상자 중 병역거부자들이 소집 거부를 하여 한 번 처벌받은 후에도 계속 소집되어 반복 처벌받는 자들을 말함 - 번역자주

이고 7만 6천명의 구성원을 둔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결사의 자유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표부와 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20. 비록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에 규정된 인권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당사국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와 직업교육의 과정, 특히 법 집행관들의 훈련 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반영(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21.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번에 채택된 최종견해를,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및 행정부가 한국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차기 정기보고서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비정부기구를 포함하여 일반대중에 넓게 배포되기를 요청한다.

22. 대한민국의 제4차 정기보고서의 제출기한은 2010년 11월 2일이다. 이번에 채택된 최종견해는 공표되고 일반대중 뿐만 아니라 사법부, 입법부 및 행정부에 넓게 배포될 것을 요청한다.

23. 위원회의 절차규칙 제71조 5항에 따라, 12, 13 및 18항의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추가정보를 1년 이내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차기 정기보고서에 권고 및 규약의 이행 전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기를 요청한다.